

충청북도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4년 6월 16일

나. 회부일자 : 1994년 6월 16일

3. 제안이유

- 향토음식에 대한 관광상품으로서 가치를 증대시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위원회 기능은 도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 지정 및 해제, 도지정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 발굴, 관리 및 활용에 관한사항, 기타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
- 위원회 구성은 10인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부지사로하며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향토음식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함.

5. 검토의견

충청북도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 지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역생산품을 주원료로 한 향토음식에 대해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증대시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명도가 높고 맛이 좋은 향토음식의 기능 보유자를 지정 관리운영하는 조례를 신설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위원장은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된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 지정위원회를 두고 2년의 임기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도향토음식 기능 보유자 지정 및 해제와 도지정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의 발굴 및 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조정 하는등의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로 충북의 이미지를 부각시킴과 아울러 지방재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첨 부

충청북도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 지정 조례안